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5학년도 2학기 임시 제1차

일시 2025년 11월 3일
18시 30분
장소 경영관 33B101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5학년도 2학기 임시 제1차
2025년 11월 3일 (월) 18시 30분
경영관 33B101

자료집 발행: 사무총괄국
서기: 인사운영국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목 차

1. 대의원 명단
2.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안내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안내
4. 보고 안건
 - 1) 사업 보고
 - 2) 후원금 결산안
5. 인준 안건
 - 1) 제57대 총학생회 종반기 학생회비 결산안
 - 2)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인준
6. 논의 안건
7. 기타 안건 및 건의사항

회의 진행 순서

1. 정족수 확인
2. 개회 선언
3. 의장 및 서기단 소개
4.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안내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안내
6. 보고 안건 보고 및 질의응답
7. 인준 안건 검토 및 인준
8. 논의 안건 논의 및 의결
9. 건의 및 기타 질의사항 논의
10. 폐회 선언

1. 대의원 명단

순번	단위	학과/전공	직책	이름	학번	
1	총학생회		회장	정진우	2020-----	
2			부회장	조은채	2020-----	
3	유학대학		회장	송승헌	2021-----	
4			부회장	이서영	2024-----	
5		유학·동양학과	1-2학년 대표	김지혜	2025-----	
6			3-4학년 대표	하태별	2021-----	
7		문과대학		회장	정태건	2022-----
8				부회장	동윤서	2023-----
9	국어국문학과		회장	서한희	2023-----	
10			부회장	안도겸	2023-----	
11			1-2학년 대표	최한빈	2025-----	
12	영어영문학과		회장	강민주	2023-----	
13			부회장	김지원	2023-----	
14	프랑스어문학과		회장	신민경	2022-----	
15			부회장	권찬영	2020-----	
16			3-4학년 대표	박채현	2023-----	
17	러시아어문학과		회장	김벼리	2024-----	
18			부회장	김예은	2024-----	
19	독어독문학과		회장	임주연	2023-----	
20			부회장	손소울	2023-----	
21	중어중문학과		부회장	신예원	2023-----	
22			1-2학년 대표	지윤빈	2024-----	
23	한문학과		회장	서아현	2024-----	
24			부회장	임채영	2024-----	
25			1-2학년 대표	한승헌	2024-----	
26	사학과		회장	김고은	2023-----	
27			부회장	여서은	2023-----	
28			1-2학년 대표	김태희	2025-----	
29	철학과		회장	유성준	2023-----	

30			부회장	김세린	2023-----
31		문헌정보학과	회장	안지웅	2021-----
32			부회장	이지은	2021-----
33	사회과학대학		회장	배상영	2023-----
34			부회장	송하연	2023-----
35		행정학과	회장	변호영	2022-----
36			회장	김가연	2023-----
37			1-2학년 대표	김민정	2024-----
38			3-4학년 대표	표정혁	2021-----
39		정치외교학과	회장	박제성	2023-----
40			회장	고예희	2023-----
41			3-4학년 대표	이태우	2021-----
42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회장	김아루	2023-----
43			회장	천예서	2023-----
44		사회학과	회장	우다현	2023-----
45			회장	정수은	2023-----
46			1-2학년 대표	이재오	2025-----
47			3-4학년 대표	유서진	2023-----
48		사회복지학과	회장	권동우	2024-----
49			부회장	박승현	2024-----
50			1-2학년 대표	박시연	2024-----
51			3-4학년 대표	김서윤	2020-----
52		심리학과	회장	이민주	2023-----
53			부회장	김은엽	2023-----
54			1-2학년 대표	정승재	2024-----
55			3-4학년 대표	김의균	2020-----
56		소비자학과	회장	이예린	2023-----
57			부회장	정혜승	2023-----
58			1-2학년 대표	이정원	2023-----
59			3-4학년 대표	김아영	2021-----
60		아동청소년학과	회장	정민서	2023-----
61	부회장		이서연	2023-----	
62	1-2학년 대표		박운유	2025-----	

63			3-4학년 대표	김영채	2023-----	
64	경제대학	경제학과	회장	최휘철	2023-----	
65			부회장	황인준	2022-----	
66			회장	황예은	2023-----	
67			부회장	윤서연	2023-----	
68		통계학과	회장	이채은	2023-----	
69			회장	조은지	2023-----	
70			1-2학년 대표	최배훈	2024-----	
71			3-4학년 대표	김경민	2023-----	
72		글로벌경제학과	회장	손창우	2024-----	
73			부회장	호원준	2024-----	
74			1-2학년 대표	우승빈	2025-----	
75			회장	윤호준	2020-----	
76		경영대학	글로벌경영학과	부회장	송강재	2020-----
77				회장	박태운	2024-----
78	부회장			김지민	2024-----	
79	1-2학년 대표			김재호	2025-----	
80	경영학과		1반 반장	백결	2025-----	
81			2반 반장	강건우	2025-----	
82			3반 반장	김성재	2025-----	
83			4반 반장	유재윤	2025-----	
84			5반 반장	김민서	2025-----	
85			6반 반장	정진서	2025-----	
86		7반 반장	윤수연	2025-----		
87		8반 반장	권재형	2025-----		
88		9반 반장	윤시현	2025-----		
89		10반 반장	한지옥	2025-----		
90	사범대학		부회장	백현	2023-----	
91		교육학과	회장	신진우	2024-----	
92			부회장	주가현	2024-----	
93			1-2학년 대표	이수영	2025-----	
94		수학교육과	회장	임종하	2024-----	

v			부회장	박예림	2024-----		
96			1-2학년 대표	김현준	2025-----		
97			부회장	김성규	2024-----		
98			1-2학년 대표	김태훈	2025-----		
99		컴퓨터교육과	회장	허준서	2024-----		
100			부회장	이수정	2024-----		
101			1-2학년 대표	이세현	2025-----		
102	예술대학		회장	김연희	2023-----		
103				부회장	조안지	2021-----	
104			미술학과	회장	권윤아	2023-----	
105					부회장	우지원	2023-----
106					1-2학년 대표	최유영	2025-----
107					3-4학년 대표	김준호	2023-----
108			디자인학과	회장	조하린	2023-----	
109					부회장	김시연	2023-----
110					1-2학년 대표	김연수	2025-----
111					3-4학년 대표	육형빈	2019-----
112			무용학과	회장	김민채	2023-----	
113					부회장	석이강	2023-----
114					1-2학년 대표	황연지	2025-----
115					3-4학년 대표	김민영	2023-----
116			영상학과	회장	정다운	2023-----	
117					부회장	김형우	2024-----
118					1-2학년 대표	최재혁	2024-----
119					3-4학년 대표	민서원	2021-----
120			연기예술학과	회장	윤영성	2020-----	
121					부회장	김도영	2023-----
122					1-2학년 대표	채승희	2024-----
123					3-4학년 대표	이자인	2022-----
124			의상학과	회장	김기도	2022-----	
125					부회장	김동현	2022-----
126					1-2학년 대표	장정욱	2024-----
127					3-4학년 대표	정하은	2022-----

128	글로벌리더학부	회장	장한결	2023-----	
129		부회장	장윤지	2023-----	
130		1-2학년 대표	이규원	2025-----	
131	글로벌융합학부	회장	한사랑	2023-----	
132		부회장	양해솔	2023-----	
133		데이터사이언스융합전공	회장	김지희	2023-----
134			부회장	임채민	2023-----
135			3-4학년 대표	이채빈	2023-----
136		인공지능융합전공	회장	김다인	2023-----
137			부회장	최규민	2021-----
138			1-2학년 대표	황도영	2024-----
139			3-4학년 대표	김정연	2023-----
140		컬처앤티크놀로지융합전공	회장	강소리	2023-----
141			부회장	조서현	2023-----
142			1-2학년 대표	김나은	2024-----
143			3-4학년 대표	장태혁	2023-----
144		동아리연합회	회장	노규원	2022-----
145			연행예술분과장	고주아	2024-----
146	기악예술분과장		우민혁	2024-----	
147	문화창작분과장		김현서	2021-----	
148	취미교양분과장		변지호	2025-----	
149	스포츠분과장		배진형	2024-----	
150	종교분과장		고명한	2024-----	
151	학술사회분과장		이은소	2023-----	
152	봉사분과장		현진	2021-----	

2.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시행 2024.09.15.] [2024.09.0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2
제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2
제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3
제2장 전체학생총회	5
제1절 인식전체학생총회	5
제2절 전체학생총회	6
제3장 학생총투표	8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0
제1절 인식학생대표자회의	10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1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15
제1절 인식중앙운영위원회	15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16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	18
제6장 총학생회장단	20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23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25
제9장 단위기구	26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26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27
제10장 특별기구	29
제11장 재정	33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34
제13장 회칙·세칙·규칙	35
제1절 통칙	35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35
제3절 세칙·규칙	36
부칙	38

제1장 총칙

제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제1조 (명칭)

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교수, 교직원, 동문과 더불어 대학의 4주체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과 건학이념인 수(修), 기(己), 치(治), 인(人), 교시인 인(仁), 의(義), 예(禮), 지(知)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이원화 캠퍼스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과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 ① 입학·편입학 등의 사유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소속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 (정회원과 준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 ③ 준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 휴학생 및 수료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 ⑦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산하 의결기구 발의권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4.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항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제7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 캠퍼스 총학생회, 언석전체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언석학생대표자회의, 언석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을 둔다.

제8조 (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한 사항

제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제9조 (명칭)

- ①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캠퍼스회”)라 한다.
- ② 양 캠퍼스의 캠퍼스회를 각각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라 한다.

제10조 (목적)

캠퍼스회는 캠퍼스 내 독자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학생사회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설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각각 둔다.

제12조 (지위 및 의무)

- ① 캠퍼스회는 각 캠퍼스를 대표하는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 ② 캠퍼스회는 본회를 구성하는 조직으로서, 본회를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회원)

캠퍼스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소속 캠퍼스 회원으로 한다.

제14조 (정회원과 준회원)

캠퍼스회 회원의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은 본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캠퍼스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 (캠퍼스회의 구성)

캠퍼스회는 캠퍼스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1절 연석전체학생총회

제17조 (지위)

연석전체학생총회(이하 “연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연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9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총회를 주재한다.
- ② 연석총회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 ①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의 연서
 2.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연석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1조 (업무 및 권한)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총회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3.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4. 기타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22조 (계획)

- ① 연석총회는 각 캠퍼스회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연석총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 ① 연석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안전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최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석총회의 안전을 연석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 3호의 안전은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전체학생총회

제25조 (지위)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는 캠퍼스회의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총회는 캠퍼스회의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7조 (의장)

-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28조 (소집)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연서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 3.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일시
 - 2. 회의 장소
 - 3. 안전
 -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9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전체학생총회 안건의 상정
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탄핵안
4. 기타 캠퍼스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30조 (개회)

- ① 총회는 캠퍼스회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총회의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29조제3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33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연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4조 (투표권)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35조 (시행 및 공고)

-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의 연서
 2.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 발의 즉시 학생총투표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학생총투표는 발의 공고로부터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로부터 5일 후에 시행할 수 있다.
- ④ 투표 실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투표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경우 제5호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1. 안건
 2. 안건에 대한 설명
 3. 본조 제1항에 의한 시행 근거
 4. 시행 일시
 5. 투표소 설치 장소

제36조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이하 “총투관위”)는 투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총투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3.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 ③ 학생총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총투표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총투관위는 투표일 20일 이전에 구성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 발의 후 즉시 구성할 수 있다.
- ⑤ 총투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총투관위는 투표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⑦ 총투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투표관리위원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

력을 모집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

- ① 학생총투표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한다.
- ②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제상정하지 못한다.

제38조 (준용)

기타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9조 (캠퍼스회 개별 시행)

- ① 학생총투표는 안건에 따라 해당 캠퍼스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캠퍼스회 개별 시행 시에는 해당 캠퍼스회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시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② 캠퍼스회 내에서 개별 시행한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해당 캠퍼스회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 (지위)

연석학생대표자회의(이하 “연학대회”)는 연석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

제4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단
 2. 본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본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42조 (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대의원의 출결)

- ① 대의원이 연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연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학대회를 주재한다.
- ② 연학대회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 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소집)

- ①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연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② 연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45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학대회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 ① 연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3.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5. 기타 연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 ② 연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개회)

- ① 연학대회는 각 캠퍼스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연학대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8조 (의결)

연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안전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최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학대회의 안전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46조제1항제4호의 안전은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50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캠퍼스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

제51조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반장 또는 1-2학년대표 · 3-4학년대표
5.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6.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③ 본조 제1항제4호, 제6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④ 본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선출되거나 소속 단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52조 (대의원의 의무)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대의원의 출결)

①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 확대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

②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③ 위임장과 결석계는 전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의장)

- ①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전학대회를 주재한다.
- ②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55조 (소집)

-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④ 전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55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대회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업무 및 권한)

-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2. 학생회비 배분안
 3.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
 4.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인준 및 해임

5. 총회 안건의 상정
 6. 연합대회 안건의 상정
 7.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탄핵안 발의
 8. 학생회비 인상·인하
 9. 연합대회 소집 요구
 10.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11. 기타 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 ② 전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개회)

- ① 전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전학대회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8조 (의결)

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전학대회의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56조제1항제7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제60조 (지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6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본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 본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연석중운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의무)

- ① 연석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연석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연석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위원의 출결)

- ① 연석중운위원이 연석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연석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을 가진 연석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중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중운을 주재한다.
- ② 연석중운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희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 (소집)

- ① 연석중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총학생회장단 임기 시작일로부터 반기에 한 번씩,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의장단의 요구
 - 2.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66조 (업무 및 권한)

연석중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분회 제반 사업
- 2.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및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상정
-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 4. 연학대회 안건의 상정
- 5. 본회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
- 6. 총학생회칙 유권해석
- 7.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8. 연학대회 소집 요구

제67조 (개회)

- ① 연석중운은 각 캠퍼스회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 ② 연석중운은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8조 (의결)

연석중운은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석중운의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 표를 인정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69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70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하 “중운위원”)이 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71조 (위원의 의무)

- ① 중운위원은 회직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위원의 출결)

- ① 중운위원이 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중운 개회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을 가진 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 (의장)

- ①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74조 (소집)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의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74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운의 의결 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업무 및 권한)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 및 캠퍼스회 제반 사업
2. 학생회비 배분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
3.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 설치
5. 기타 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6. 연석중운 안건의 상정
7.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진행에 대한 조정
8.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9. 전학대회 소집 요구
10. 연석중운 소집 요구

제76조 (개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77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

제78조 (확대회의)

중앙운영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이하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9조 (구성)

- ① 확대회의의 구성원을 “확대운영위원”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대운영위원(이하 “확운위원”)이 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
- ③ 각 단위의 확대운영위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제80조 (위원의 의무)

- ① 확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 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확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확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 (위원의 출결)

- ① 확운위원이 확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확대회의의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확운위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2조 (의장)

- ① 의장은 확대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확대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83조 (소집)

- ① 확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확대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② 소집일은 요구 직후 예정된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 (업무 및 권한)

- ① 제59조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전학대회의 안건을 전학대회의와 동일한 절차로 심의·의결한다.
- ② 제136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의 활동을 승인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을 결정한다.
- ③ 그 밖의 업무 및 권한은 중앙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

제85조 (개회)

- ① 확대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확대회의는 국가적 재난 등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6조 (의결)

확대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학생회장단

제87조 (지위 및 구성)

- ① 총학생회장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연석총회, 총회, 연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앙운영위원회 등의 의장이 된다.
- ③ 각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소속 캠퍼스회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의무)

- ①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연석총회, 총회, 연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칙을 준수하며, 임기 초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이 숙지해야 할 총학생회칙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업무 및 권한)

- ① 연석총회, 총회, 연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회의,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결산안, 사업 계획 등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권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은 소속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집행국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총학생회장단은 자기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에게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 ①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은 자기 총학생회장단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로 전환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및 선거운동본부부 그 즉시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자기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경우, 인수위원을 두지 않는다.
-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인계
 2. 총학생회 집행기구의 조직·기능 및 예·결산 현황의 파악
 3. 기타 총학생회 집행기구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④ 총학생회 인수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본조 제3항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해산한다.

제90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1. 차기 선거로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2.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 ③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1조 (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불법 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총학생회장단
 2.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4. 캠퍼스회 부총학생회장
- ③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 ④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91조의2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1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연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연석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연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연석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연석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연학대회 재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전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전학대회 재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캠퍼스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캠퍼스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9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즉시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93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총학생회장단이 궐위·탄핵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중강일로부터 140일 이내 일 경우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4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선거가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차기 연도 중앙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각 회의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2.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무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한 경우,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과정 (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5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제96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중앙운영위원회 단위 집행위원 중 1인 이상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7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선출된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8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양 캠퍼스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총회, 연학대회, 연석준공 회의를 소집하고, 각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된다.

제99조 (준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제100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캠퍼스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01조 (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집행국은 국장, 차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제102조 (중앙집행위원장)

-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국장 중 1인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집행위원)

- ①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104조 (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업무의 집행
2. 의결기구에서 사업 보고, 운영 계획, 예·결산안의 제출
3. 본회 및 캠퍼스회의 집행 전반

제105조 (공동 운영)

각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양 캠퍼스회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는 총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른다.

제9장 단위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제106조 (지위)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6조의2 (독립단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단위의 지위를 인정한다.
 1.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 또는 학과
 2. 소속 단과대학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학부 또는 학과
- ②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캠퍼스회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 (회원)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8조 (조직)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대표자회의 및 단과대학·독립단위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9조 (학생회장단)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언석중앙운영위원, 중앙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단행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재정)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본조 제1항에 의해 배분받은 학생회비를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1조 (독립성의 보장)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 (준용)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113조 (지위)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14조 (회원)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5조 (조직)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를 들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부·학과·전공 학생총회 및 학부·학과·전공 운영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6조 (학생회장단)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연합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확대운영위원이 된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제정)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가 배분받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8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단위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준용)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 또는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10장 특별기구

제120조 (특별기구의 성립 요건)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캠퍼스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캠퍼스회 회원 중 특정 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
2. 캠퍼스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3. 캠퍼스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 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4. 캠퍼스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5. 캠퍼스회의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 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121조 (분류, 구성, 위상)

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폭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독립기구, 부속기구, 임시기구, 계열기구로 구분한다.

1.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5호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현재의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한다.
2.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킨다.
3.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제120조제4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를 포함한다.
4.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되 각 학과나 기층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의 연합 등을 가리킨다.

제122조 (절차)

- ①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임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75조제4호를 따른다.
- ②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집행위원회 구성원 명부
 3. 소개서
 4. 전년도 활동보고서
 5. 사업계획서
 6. 서약서

- ③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 ⑤ 특별기구 간 전환을 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따른다. 단, 독립기구 또는 계열기구에서 부속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또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⑥ 캠퍼스회 산하의 특별기구는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캠퍼스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3조 (재정)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
- ③ 특별기구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구 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24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③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및 부속기구 회장 혹은 부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 (특별기구장단의 지위)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은 중앙운영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은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그 밖의 특별기구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126조 (특별기구의 해체)

특별기구 해체 시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단,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그 역할이 다하면 자동으로 해소된다.

제127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기구 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정

제128조 (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30조 (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
-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 회원으로부터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자치회비”라 한다.

제131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한다. 단, 집행 중인 사업의 재정이 복수의 기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초반기: 임기 시작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중반기: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 종반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2조 (예산)

- ① 예산은 매 학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전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결산)

-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반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거부권)

- 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 예산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전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예산관리 및 인출)

- ① 학생회비의 경수는 학교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모든 인출 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
- ③ 학생회비의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제136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불투명한 재정 운용 감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의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1. 중앙운영위원 중 2인
 - 2.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2인
 - 3. 각 단위의 집행위원을 제외한 회원 2명
-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이 된 단위에 대해 예·결산자료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 대표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 활동 결과를 발족 후 2주 이내에 학우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은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138조 (선거 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139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석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40조 (입후보자)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각 캠퍼스회 회원 2인으로서 하여 4인 1조로 입후보해야 한다.

제14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3.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중선관위는 투표일 50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⑤ 중선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중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계를 가할 수 있다.

제142조 (당선)

선거인 제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43조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 또는 탄핵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연석중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4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3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통칙

제145조 (정의)

- ① 총학생회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있다.
 1. 총학생회칙
 2. 세칙
 3. 규칙
- ②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에 있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세칙은 총학생회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총학생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총학생회칙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④ 규칙은 상위 규정이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위 규정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6조 (규정의 위계)

- ① 총학생회칙은 세칙에 우선하고 세칙은 규칙에 우선한다.
- ② 상위 규정에 충돌하는 하위 규정의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2. 세칙·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
- ② 회개소위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2.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 ③ 회칙개정소위원장은 회개소위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회개소위 설치의 경우, 회개소위를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연석회개소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제148조 (개정안 발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각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
3.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연석회개소위 전원의 연서

제149조 (개정안 공고)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그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②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150조 (개정안 의결)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연석중운의 심의를 거쳐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한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 (개정안 정리)

- ① 연석중운은 총학생회칙 개정 의결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연석회개소위의 발의에 의한 개정일 경우 연석회개소위가 연석중운 대신 개정안을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 (공포)

- ①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개정안 가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②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4. 시행일
 - 5. 상시 열람 방법
- ③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3절 세칙·규칙

제153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 ② 세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1.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 2.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3.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과반수의 요구

-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4조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규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연석중운 또는 연석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해당 캠퍼스회 중운 또는 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 ③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5조 (선거 관련 규정의 예외)

- 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선거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 ② 연석중선관위 구성 이전에 선거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경우, 제153조 또는 제154조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연석증문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개정 전 총학생회칙 체제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회칙 공포 시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 회계, 대표자 선출 등의 체제는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 범위의 해석)

캠퍼스회에 관한 모든 조항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의 제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성균관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세칙

제1조(회의진행의 원칙)

-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회의 공개, 방청, 공표를 실시한다.
- ② 단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1. 회의 의결(출석 과반수의 의결)에 의한 사항
 2. 회의 정계에 관한 사항
- ③ 각급 회의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을 개회 정족수로 하고 출석 인원수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단 사고처리는 재적인원에서 제한다.)
- ④ 회의는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의안을 동시에 상정할 수 없다.
- ⑤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제지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이 발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다수결의 원칙
- ⑦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 ⑧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 변안(표결심의를 동의)을 사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표결 제심의 성립요건은 제적 과반수의 이상으로 한다.
- ⑨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동의를 의해 다음 회기로 연기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등의 성립 요건은 제적 과반수로 한다.

제2조(회의의 용어)

- ① 회기(會期):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② 개회(開會): 회기 처음 시작을 말한다.
- ③ 폐회(閉會): 회기의 끝을 말한다.
- ④ 휴회(休會): 한 회기 중 회의를 며칠 쉬는 것을 말한다.
- ⑤ 휴개(休開): 회의 중 잠시 쉬는 것을 말한다.
- ⑥ 정회(停會): 회의 중 다소 길게 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정회 선포 시 회의 외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조(회의록)

- ①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 정정,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② 비공개 회의를 제외한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과 시기록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 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안 상정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에서 준비된 안 이외에 대의원 1/5이상의 연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의안 채택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동의안은 찬반토론(2인 이내)을 통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③ 의안 채택순서가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징과 채택은 찬반토론(2인 이내)을 통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④ 의안 채택 및 회순 통과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회순 변경(자료집에 명시된 순서)은 순서 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2인 이내)을 통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5조(의사진행과 관련된 규칙)

- ①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며,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발언 시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 ③ 각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의 의사진행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자, 신청자 중 찬반대표자를 의장이 지명한다.
- ④ 발언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1. 각 안에 대한 제안 서명 및 대표 토론: 20분 이내
 2.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1인당 5분 이내
 3.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3분 이내
- ⑤ 발언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한다.
 1. 질의 답변: 3인 이내
 2. 찬반 토론: 발언자를 포함한 5인 이내(발언자 외 찬, 반2인씩)
 3.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장이 가능.
- ⑥ 동일한 안건에 대해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로 한다.
- ⑦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운 위원들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제6조(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 순서)

- ①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인 토의 순서는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안건 상징
 2. 원안에 대한 보충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토론 종결(과반수 찬성, 찬반 토론 없이 결정시는 2/3 이상 찬성)
 6. 수정안 제출여부 확인 및 보충 설명

7.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진행
 8. 수정안이 제출되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9.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
 10. 토론 종결
 11. 수정안에 대한 표결
 12.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표결
- ② 수정안의 경우 2회에 한해 제출을 허용하며, 모두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한다.
- ③ 제안된 원안과 완전히 다른 안건이 상정되었을 시에는 원안의 의결이 끝난 후 다시 본조1항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토의를 진행한다.
- ④ 인준안건과 공고안건의 경우 본 조 제1항 1호 및 2호 및 3호 및 원안에 대한 표결만 시행한다.

제7조(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 회의 진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4. 보고 안건

1) 사업 보고

◆ 인권/복지

[사업 01] 낙후 시설 전면 개선 사업: Campus plus+

[사업 01] 낙후 시설 전면 개선 사업: Campus plus+

I. 배경

1. 금년도 1월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응답 결과, 현재까지 등록금 환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한 경우가 많이 없으며 학우들을 위해 '학습의 질, 교내 시설, 장학금' 3가지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됨.
2. 그동안 이루어진 시설 개선들은 대부분 학교 본부 측에서 우선적으로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하였기에, 반대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원하는 공간들에 대해 먼저 세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함.
3. 이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간 이루어진 실무회의에서 학생 의견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시설 개선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학교 본부 측 또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업 진행을 확정하게 됨.

II. 개요

2025. 3. 14. 사업 시행 안내

2025. 3. 14. - 2025. 3. 21. 전 학부생 대상 낙후 시설 설문조사 실시

2025. 7. 9. - 2025. 7. 11. 사업 진행 중 중간 보고

2025. 10. 10. 사업 최종 결과 보고

2025. 10. 10. - 2025. 10. 15. 사업 관련 학우 만족도 조사 실시

III. 세부 내용

1. 등록금심의위원회/실무회의

- 학우들의 등록금 환원 체감을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총학생회와 예산기획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중 세 차례의 실무회의를 가지며 본 사업 추진 여부와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고, 예산기획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규모 설문조사 실시

-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 개선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 전 전체 학부생 대상으로 교내 낙후 시설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설문에서는 학우들이 개선을 원하는 구체적인 공간들에 대한 의견 취합이 이루어졌습니다.
-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내용들은 모두 정리되어 학교 본부에 '시설 보수 요청' 리스트로 공유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설문 응답을 통해 확인된 학우들의 보수 희망 공간들에 모두 방문하여 1차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였고, 총학생회 시찰을 통해 정리된 각 공간들의 낙후 현황 또한 학교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3. 현장 시찰

- 시설 보수 요청 리스트를 바탕으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학교 본부(예산기획팀, 학생지원팀, 관리팀)의 동반 시찰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인들이 각 공간들에 함께 방문하여 낙후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해당 공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단과 동아리연합회장단이 각 공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학교 측에 직접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4. 보수 계획 수립

- 현장 시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 본부의 판단 하에 실제로 보수를 진행할 시설이 선정되었습니다. 대규모 시설 개선 외에 세부적인 보수 건들은 유관 행정실 및 부처로 전달되어 검토되었습니다.

5. 순차적 시설 개선

- 보수 계획이 모두 검토된 이후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중 진행 중인 시설 개선과 예정된 시설 개선 관련해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이 중간보고가 실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시설 개선이 종료된 10월에 최종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공간과 검토 중인 모든 공간들의 내역을 노선 페이지에 정리하여 학우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6. 학우 만족도 조사

- 본 사업에 대한 학우들의 만족도와 각종 피드백 내용을 확인하고, 추후 유사한 사업 진행 시 이를 참고하기 위하여 사업에 대한 학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림 1]. 낙후 시설 전면 개선 사업: Campus plus+ 진행 안내 자보



[그림 2]. 교내 낙후 시설 설문조사 실시 안내 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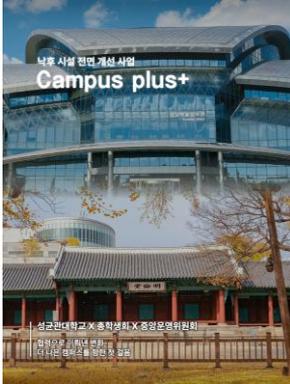
[그림 3]. 각 건물별 중간 보고 자보 표지



[그림 4].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최종 결과 보고 자보



[그림 5]. 학우 만족도 조사 안내 자보



주요 시설 개선 내역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화장실 전면 신규 리모델링



▲ 휴게인원관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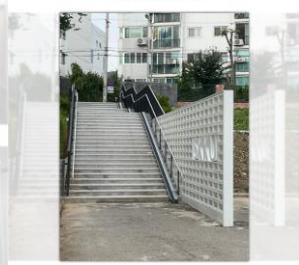


▲ 학생회관 화장실

주요 시설 개선 내역

자연과학캠퍼스

복사원(복합) 출입구 전면 개선



주요 시설 개선 내역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미술학과 실기실 냉난방기 및 환기설비 점검



주요 시설 개선 내역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 뒤 시설 출입구 전면 개선



전체 시설 개선 내역

인문사회과학캠퍼스

* (2025. 10.1 기준 시행 완료 내역만 표함)

사실	보수 내용
휴게인원관 전 층	화장실 전면 신규 리모델링
휴게인원관 6층	강의실 31609 전자출결 비콘 재부착
화장실 전 층	화장실 전면 신규 리모델링
학생회관 전 층	천장 시연 전기 및 배선시
학생회관 2층	통아리방 80201 외벽 방화 불수 및 배관 설치
학생회관 2층	통아리방 80213 방화 모뎀(광학), 방화 계기
학생회관 3층 지부	1, 2층 통아리방 누수 방지 목적 방화 차단막 설치
학생회관 4층	통아리방 80418 벽면 굴뚝이 제거 및 배관도 보수
수신관 관련 1층	미술학과 실기실 냉난방기 및 환기설비 점검
수신관 주변 3층	사시실 61314 라디에이터 점검 및 교체용 방사선: 재설치
영양관 지부 4층	영양관 전 층 지붕 보수 및 계층 누수 조치
영양관 지부 4층	오물 조도 방지 개칭
영양관 3~3층	외벽 누수 방기(배선, 소파) 교체
영양관 지부	외부 계단 난간 페인트 보수 시공
디산관역 1층	시안대학 학생생활 편의 누수 방지 추가 보수-관할 예정
요양관 2층	복사지실 50215 내부 벽체 교체, 방화문 공간 확보

전체 시설 개선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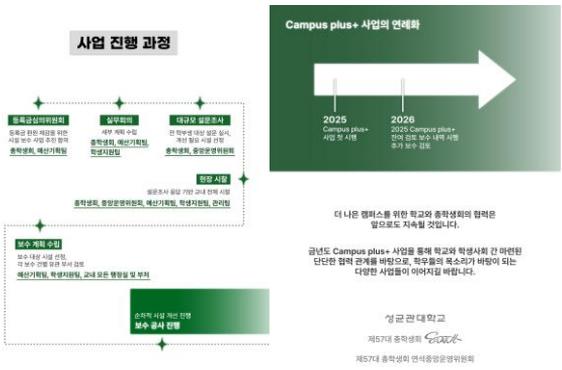
자연과학캠퍼스

* (2025. 10.1 기준 시행 완료 내역만 표함)

사실	보수 내용
외부	복사원(복합) 출입구 전면 개선
외부	반도체관 뒤 시설 출입구 전면 개선
체육관 6층	22층 통 오존 소독기도 공간 통풍팬
제2공학관 5층	22층 배선 스트라이프 차단공간 개선
제2공학관 3층	강의실 26312 책상 관색의 노후 교체 및 추가 설치
제2공학관 4~5층	22층 및 23층 미운정 코드 개선
외부	23층 카페 및 계단 보수 및 방화벽 설치
제2공학관 1~3층	방화 벽도 훼손공간 조형 추가 설치 및 코드 상향 조치
생물공학관 3층	방화문 61305 지기 교체 및 대피로 문선풍 점검
영양관역 1층	621576 벽면 크랙 보수
학생회관 전 층	3층 관할 지붕벽 설치

보다 자세한 Campus plus+ 사업 세부 현황은
QR 코드를 참고해주세요.





[그림 6]. 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skku.official)에 게시된 Campus plus+ 사업 관련 자보

2) 결산안

◆ 후원금 결산

후원금 결산안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기간: 2025. 9. 1. - 2025. 11. 3.					
수입			지출		
연번	내용	금액	연번	내용	금액
1	전기 후원금 이월금	2,558,499	1	ESKARA 운영	2,242,190
2	프로모션 후원금	11,250,000	2	파동 가을 야유회 현수막	32,000
3	학위복 연체료	25,000			
4	포토 이벤트 수익	167,000			
5	이자 및 캐시백	2,473			
수입 총계		14,002,972	지출 총계		2,274,190

결산잔액	11,728,782
------	------------

◆ 세부 근거 [별첨]

[별첨] 후원금 세부 결산안 및 결산 증빙 자료

[결산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I. 세부 결산안

순번	업체명	날짜	금액	비고
1	팬톤팩토리 주식회사	9. 2.	167,200	
2	더(THE)채움	9. 2.	350,000	
3	쿠팡(주)	9. 3.	318,200	
4	3DWORKS	9. 3.	54,000	
5	쿠팡(주)	9. 3.	8,200	10,600원 반품
6	쿠팡(주)	9. 4.	9,990	
7	쿠팡(주)	9. 5.	24,000	
8	주식회사 위블링	9. 5.	11,900	
9	인터프록뮤니케이	9. 5.	120,870	
10	상암 Fabric	9. 8.	94,500	
11	쿠팡(주)	9. 8.	6,400	
12	쿠팡(주)	9. 8.	103,080	
13	쿠팡(주)	9. 9.	24,000	
14	행운수예	9. 9.	40,000	
15	쿠팡(주)	9. 9.	22,150	
16	국민OA (드림카페)	9. 10.	20,000	
17	코레일유통(성균관대역점)	9. 10.	14,200	
18	쿠팡(주)	9. 10.	24,000	
19	(주)코리아세븐 성균관대입구점	9. 11.	5,500	
20	쿠팡(주)	9. 11.	24,000	
21	우리은행 성균관대학교지점	9. 15.	200,000	
22	(주)어울림씨앤씨	9. 19.	600,000	
23	대원애드컴	9. 22.	32,000	

II. 세부 결산 근거

[그림 1]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167,20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2 14:42:06	
거래종류	국내매입 25516749	
금액	167,200원	
부가세	0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167,200원	
가맹점명	팬톤팩토리 주식회사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98849552	
가맹점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10층 1001호 (가산동,IT캐슬4차)	
사업자등록번호	1198646658	

[그림 2]

카드 영수증

카드사/승인번호	국민 / 29516849
카드번호(유효기간)	****_****_****_****(**/**)
거래종류/할부	체크(개인) / 일시불
결제일자	2025-09-02 14:50:28
상품명	버블슈트대여, 버블슈트렌탈
상품 주문번호	DF20250902108508664304

판매자 정보

판매자상호	더(THE)채움
대표자명	문형필,한수화
사업자등록번호	361-32-01429
전화번호	010-4590-0728
사업장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1길 42 (빛가람엘에이치2단지아파트) , 202동 1202호 (우 : 58326)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대표자명	박상진
가맹점번호	0008*****
사업자등록번호	524-86-0152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NAVER 1784

금액

승인금액	50,000
공금가액	45,455
부가세액	4,545
봉사료	0
합계	50,000

· 본 영수증은 네이버파이낸셜(주)에서 발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 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그림 3]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318,20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3 15:53:20	
거래종류	국내매입 27517492	
금액	318,200원	
부가세	0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318,200원	
가맹점명	쿠팡(쿠팤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82418262	
가맹점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N동 9층 (문래동3가,세미클론문래)	
사업자등록번호	2208115770	

[그림 4]

카드 영수증

카드사/승인번호	국민 / 27517672
카드번호(유효기간)	****_****_****_****(*/**)
거래종류/할부	체크(개인) / 일시불
결제일자	2025-09-03 17:13:54
상품명	[주문제작] 나무고무인 도장 스탬프 고무인
상품 주문번호	PD2025090322478011

판매자 정보

판매자상호	3DWORKS
대표자명	이용관
사업자등록번호	119-12-05980
전화번호	010-3092-8130
사업장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31 1층 (우 : 10559)

가맹점 정보

가맹점명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대표자명	박상진
가맹점번호	0008*****
사업자등록번호	524-86-01528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95, NAVER 1784

금액

승인금액	54,000
공급가액	49,091
부가세액	4,909
봉사료	0

합계 **54,000**

· 본 영수증은 네이버파이낸셜(주)에서 발행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 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그림 5]

kakaobank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B 취소 카드영수증	
거래금액	18,800원	결제정보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종류	카카오뱅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종류	신용거래
거래일시	2025.09.03 17:17:18	할부개월	일시불
거래증류	국내매입 23517769	카드번호	536510*****335*
금액	17,090원	거래일시	2025/09/03 17:17:18
부가세	1,710원	취소일시	2025/09/07 22:00:07
봉사료	0원	승인번호	23517769
거래금액 합계	18,800원	구매정보	
가맹점명	쿠방(쿠팡이)	주문번호	11100137645425
업종	전자상거래PG	상품명	그린비닐 접착식 투명 OPP 봉투, 8 x 10 + 4 cm, 400 개
가맹점번호	000000089226357	과세금액	9,636원
가맹점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NHN KCP)	비과세금액	0원
사업자등록번호	1138521083	부가세	964원
		합계금액	10,600원
		이용상점정보	
		판매자상호	쿠팡(주)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120-88-00767
		판매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신천동) -

[그림 6]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9,99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4 16:40:58	
거래종류	국내매입 23518173	
금액		9,081원
부가세		909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9,990원
가맹점명	쿠팡(쿠파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89226357	
가맹점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NHN KCP)	
사업자등록번호	1138521083	

[그림 7]

kakaobank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24,00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5 02:48:07	
거래종류	국내매입 20518237	
금액	21,818원	
부가세	2,182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24,000원	
가맹점명	쿠팡 (쿠팡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89226357	
가맹점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 NHN KCP)	
사업자등록번호	1138521083	

[그림 8]

kakaobank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11,90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5 02:58:06	
거래종류	국내매입 23518394	
금액	11,900원	
부가세	0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11,900원	
가맹점명	주식회사 위블링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13980940	
가맹점주소	서울 중구 통일로 92 14-15층 (순화동,케이지타워)	
사업자등록번호	2208155597	

[그림 9]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120,87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9490-99**-****-4367 (**/**)	
거래일시	2025.09.05 16:59:59	
거래종류	국내매입 22518787	
금액	109,881원	
부가세	10,989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120,870원	
가맹점명	인터프로커뮤니케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13219101	
가맹점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NHN KCP (구로동)	
사업자등록번호	1138521083	

[그림 10~11]

영 수 증

No. 귀하

사 입 자 등록번호	108-43-88267		
상 호	상암 Fabric	성 명	황경환
사 입 장 소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시장 A동 3F 3189호		
업 태	도매업	종 목	직물·무역
작성년월일	금 액	비 고	
2025.9.8.	94500		
위 금액을 영수(접수)함.			
월일	품 목	수 량	단 가
	다 림 김		
	리y		① 4500
			₩ 94500
			LAZ빌드
<p>우리은행 황경환</p> <p>1002-25-2348420</p>			
W			

TEL, 02) 2277-7076 FAX, 02) 2277-7084



[그림 12]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6,40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8 16:15:12	
거래종류	국내매입 26519878	
금액	5,818원	
부가세	582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6,400원	
가맹점명	쿠팡(쿠팤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89226357	
가맹점주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구로동,NHN KCP)	
사업자등록번호	1138521083	

[그림 13]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103,08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8 23:11:42	
거래종류	국내매입 21520194	
금액	103,080원	
부가세	0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103,080원	
가맹점명	쿠팡 (쿠팡페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82418262	
가맹점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N동 9 층 (문래동3가,세미콜론문래)	
사업자등록번호	2208115770	

[그림 14]

2:43

5G 100

카드영수증



결제정보

카드종류	신한카드
거래종류	신용거래
할부개월	일시불
카드번호	489023*****561*
거래일시	2025/09/09 14:53:12
승인번호	35087294

구매정보

주문번호	26100138861964
상품명	인스탁스 즉석 스쿼어 필름 20p + 포토 체어 + 포토 라 인 세트, 1세트
과세금액	21,818원
비과세금액	0원
부가세	2,182원
합계금액	24,000원

이용상점정보

판매자상호	쿠팡(주)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120-88-00767
판매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 로 570 (신천동) -

[그림 17]

kakaobank		B
카드매출 온라인전표		

거래금액		22,150원
카드종류	프렌즈 체크카드	
카드번호/유효기간	5365-10**-****-3350 (**/**)	
거래일시	2025.09.09 19:03:06	
거래종류	국내매입 28520425	
금액		22,150원
부가세		0원
봉사료		0원
거래금액 합계		22,150원
가맹점명	쿠팡(쿠팡이)	
업종	전자상거래PG	
가맹점번호	000000082418262	
가맹점주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N동 9 층 (문래동3가,세미콜론문래)	
사업자등록번호		2208115770

[그림 18]



국민OA (드림카피)

20,000 원

카드번호	5320-92**-****-9581
거래유형	국내일반
거래일시	2025.09.10 11:40:09
취소일시	
승인번호	46996431

승인금액	20,000 원
매입금액	20,000 원
부가세	1,819 원
봉사료	0 원
컵 보증금액	0 원

가맹점명	국민OA (드림카피)
사업자번호	8473200244
가맹점번호	00984963413
업종	판촉물.인쇄.복사
가맹점전화번호	02)766-0767
가맹점 주소	(030-63) 서울 종로구 성균관 로 25-2, 경영관 B1층 (명륜3 가)

[그림 19]

코레일유통(성균관대역점)

14,200원 ^

공급가액	12,912원
부가세	1,288원
자원순환보증금	0원
봉사료	0원

거래일 2025.09.10 20:35

거래구분 일시불

승인번호 05241547

거래상태 결제확정

이용카드 본인 728*

가맹점 정보 ^

코레일유통(성균관대역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성균관대역
주소복사

02-2630-8800

가맹점번호	0127606762
대표자명	박정현
사업자번호	107-86-57147
업종	편의점

카드영수증



결제정보

카드종류	신한카드
거래종류	신용거래
할부개월	일시불
카드번호	489023*****561*
거래일시	2025/09/10 23:52:10
승인번호	06892974

구매정보

주문번호	26100139229965
상품명	인스탁스 즉석 스쿼어 필름 20p + 포토 체어 + 포토 라 인 세트, 1세트
과세금액	21,818원
비과세금액	0원
부가세	2,182원
합계금액	24,000원

이용상점정보

판매자상호	쿠팡(주)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120-88-00767
판매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 로 570 (신천동) -

[그림 21]

(주)코리아세븐 성균관대입구점
5,500원 ^

공급가액	5,500원
부가세	0원
자원순환보증금	0원
봉사료	0원

거래일	2025.09.11 10:09
거래구분	일시불
승인번호	12265898
거래상태	결제확정
이용카드	본인 728*

가맹점 정보 ^

(주)코리아세븐 성균관대입구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6번길 10 (울전동)
[주소복사](#)
[031-1577-0711](tel:031-1577-0711)

가맹점번호	0100194547
대표자명	김홍철
사업자번호	843-85-00379
업종	편의점

카드영수증



결제정보

카드종류	신한카드
거래종류	신용거래
할부개월	일시불
카드번호	489023*****561*
거래일시	2025/09/11 14:49:26
승인번호	16292780

구매정보

주문번호	26100139328985
상품명	인스타그램 즉석 스쿼어 필름 20p + 포토 체어 + 포토 라인 세트, 1세트
과세금액	21,818원
비과세금액	0원
부가세	2,182원
합계금액	24,000원

이용상점정보

판매자상호	쿠팡(주)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120-88-00767
판매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신천동) -

[그림 23]

공용영수증



신세계백화점상품권 (현금판매)

성명	이혜연	귀하	거래일시	2025-09-15 15:50:07
계좌번호			적요	판매일자 : 2025-09-15

판매금액 : 200,000원 판매구분 : 현금판매

권종 권종명 수량 판매금액 (상품권번호)
 (4206) 십만원권 2매 ₩200,000원 (6115606824838 - 6115606824845)



위 금액을 경히 영수합니다.

* 상품권 구입에 대한 취소는 반드시 본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취소는 구매하신 지점에서 구매 당일만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은행 성균관대학교지점 02-766-5329
 지점 (☎)

담당자명 : 원희연

*신용카드(0000213042, 200 * 1300) 백상지(00) 0010206,계정

[그림 24]

*이체확인증 품목명은 오기입된 것으로, 실제 비용은 현수막 제작에 집행되었습니다.

수급자	2025년 09월 03일	공급자	등록번호	884-81-00407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귀하		상호	㈜어울림씨앤씨	성명	백수지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주소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8번길 50 1층		
			업태	서비스업 도소매	종목	행사기획,이벤트

구분	항목	내역	횟수	수량/인원	단가	금액	비고
홍보물	학생회관	5.5m*10m 줄미싱	1	2	300,000	600,000	
	소계					600,000	
합계						600,000	
총계	합계					600,000	

kakaobank 
이체확인증

금액 **600,000원**

이체일시	2025.09.19 15:04:42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카카오뱅크 ****-**-****3317 이재홍
입금 계좌번호 받는분(기관명)	신한은행 110060526002 김정우
수수료	0원
받는 분에게 표기	이재홍
나에게 표기	ESKARA 패스트트랙 렌탈비

※ 거래확인증은 법적효력은 없으며,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거래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25]

거래일자		거래명세표 (공급받는자용) 1 / 1									
2025년 9월 22일											
공급받는자	상호 (법인명)	성균관대총학생회			귀하	등록번호	101-06-87850				
	사업장 주소				상호 (법인명)	대원애드컴		성명	김정현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3길 12(동충동)					
	합계금액	₩32,000			전화	02-747-0244		팩스	02-762-4964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9	22	동페스타									
		현수막/사방타공	5800*500	1	32,000	32,000					
		부가세별도/이하여백									
		기업은행 / 김정현									
		277-009974-02-021									
인수자		납품자		월결	현금	신용	미수	소계	₩32,000		

거래일자		거래명세표 (공급받는자용) 1 / 1									
2025년 9월 22일											
공급받는자	상호 (법인명)	성균관대총학생회			귀하	등록번호	101-06-87850				
	사업장 주소				상호 (법인명)	대원애드컴		성명	김정현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3길 12(동충동)					
	합계금액	₩32,000			전화	02-747-0244		팩스	02-762-4964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9	22	동페스타									
		현수막/사방타공	5800*500	1	32,000	32,000					
		부가세별도/이하여백									
		기업은행 / 김정현									
		277-009974-02-021									
인수자		납품자		월결	현금	신용	미수	소계	₩32,000		

6. 인준 안건

1) 결산안

◆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안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 S:CATCH					
기간: 2025. 9. 2. - 2025. 11. 3.					
수입			지출		
연번	내용	금액	연번	내용	금액
1	전기 학생회비 이월금	₩840,567	1	ESKARA 형광조끼 구매	₩199,200
2	당기 학생회비	₩10,449,600	2	ESKARA 티셔츠 구매	₩10,174,000
3	예금 결산 이자	₩358			
수입 총계		₩11,290,525	지출 총계		₩10,373,200

결산잔액	₩917,325
------	----------

◆ 세부 근거 [별첨]

◆ 의결 사항

찬성	반대
상기 결산안을 인준한다.	상기 결산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별첨] 학생회비 세부 결산안 및 결산 증빙 자료

[결산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I. 세부 결산안

순 번	업 체 명	날 짜	금 액	비 고
1	다원유통	9. 3.	₩199,200	ESKARA - 형광조끼
2	(주)모스티스	10. 29.	₩10,174,000	ESKARA - 티셔츠

2)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인준

◆ 세부 근거 [별첨]

◆ 의결 사항

찬 성	반 대
상기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인준한다.	상기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I.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제출 예정일
2025년 11월 3일

자연과학캠퍼스 제출 예정일
2025년 11월 3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가결 시 전부개정안 시행 예정일
2025년 11월 9일

1. 추진 배경 및 제안 이유	2
2. 주요 내용	3
3. 전부개정안	7

성균관대학교 2025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 발의

정진우 · 전형도 · 조은채 · 손윤서 · 최휘철 · 송강재 · 장한걸 ·
장윤지 · 조은지 · 이재민 · 김서준 · 신준호 · 정유민 · 윤주성

1. 추진 배경 및 제안 이유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학부 학생회, 학과·전공 학생회, 특별기구 등 본회를 대표하는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존립 근거이며, 본회의 민주적·공정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가 분리된 회칙을 사용함에 따라 여러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1992년 이후 공동회칙 제정을 위한 다수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전부개정을 통해 통합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이 제정되었다.

총학생회칙 제정 이후 약 2년간 학생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2023년에는 대의기구 출결 관리의 형식화를 강화하고,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 채택에 따라 재정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다. 2024년에는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의기구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시하는 등 현행 실정에 맞춘 개선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회칙 통합 및 일부개정 과정에서 용어와 표기의 정합성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고, 학생사회의 현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회칙의 전면적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성을 담은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제안한다.

이에 성균관대학교 제57대 총학생회장단과 총학생회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담은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제안한다.

2. 주요 내용

□ 개정 기초

본 개정은 공식 표기의 통일·정비를 통해 총학생회칙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본회 기구의 소집 요건·업무·권한·구성 등 체계 전반을 현행 학생사회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회칙 통합 및 일부개정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한 수정 사항을 바로잡아 회칙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 공식 표기 통일 및 정비

1) 연석학생대표자회의 명칭 정비

연석학생대표자회의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장제1절에 규정되어 있다. 그 성격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연석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각 캠퍼스회에서 진행하는 회의의 직속 상위 회의체는 명칭 앞에 ‘연석’을 붙여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전체학생총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위 회의체는 각각 ‘연석전체학생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로 명명한다. 그럼에도 연석학생대표자회의의 현 명칭은 이러한 규정 원칙과 상충한다. 더불어 본 회칙에는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라는 용어가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어 회의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명칭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약칭 또한 ‘연학대회’에서 ‘연석전학대회’로 조정하여 해당 기구의 연석 운영 특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약칭 정비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양 캠퍼스 총학생회, 연석전체학생총회,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을 두고, 각 캠퍼스 총학생회는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를 둔다. 이원화된 캠퍼스 구조로 인해 각 기구의 약칭 사용 빈도가 타교에 비해 높으며, 이에 대한 공식 규정의 중요성이 크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상설 의결기구로서 본 회칙 전반에서 빈번히 인용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회의체와 달리 약칭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생사회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약칭의 실무 현실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한 약칭 규정을 신설한다.

3) 기타 약칭 규정 정비

본 회칙에는 다양한 기구와 회의체,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한 약칭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나 본 회칙이 통합되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약칭이 불규칙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연석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총회,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및 그 위원, 중앙운영위원회 및 그 위원, 확대운영위원회 및 그 위원, 그 외에 약칭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을 수정함으로써 회칙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4) 띄어쓰기 오류 수정

본 회칙에 존재하는 일부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회칙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 본회 회의체 조항 보완

1) 연석전체학생총회·전체학생총회 개최 요건 수정

연석전체학생총회와 전체학생총회는 각각 본회와 캠퍼스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현행 회칙상 각각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연서로 안건 상정을 거쳐 소집되나, 해당 내용이 각 회의의 업무 범위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두 회의의 업무 범위에 위 권한을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집행 가능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회칙상 개최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회의체 개최가 사실상 억제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각 제22조제2항, 제30조제2항에서 회의 형태의 변형(온라인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 사유가 추상적이고 의장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다. 개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대면 외 진행 형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온라인 진행과 관련한 요건은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회의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들 회의가 대의기구임을 감안하여 의장의 재량권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교명	개회 관련 조항
성균관대학교	연석총회: 각 캠퍼스회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 총회: 캠퍼스회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
서울대학교	본회의 회원 전체의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고려대학교	정회원·준회원 2천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연세대학교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서강대학교	전체 회원 1/9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

2) 상위 기구에 대한 소집 요구 및 안전 상정 권한 추가

전체학생총회,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상위 기구에 대해 안전을 상정하며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업무 및 권한 조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실무 현실과 규범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기구의 업무·권한 규정에 ‘상위 기구에 대한 소집 요구 및 안전 상정 요청 권한’을 명시한다.

3) 연석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관련 조항 수정

연석학생대표자회의는 성격상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연석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대의원 자격 요건이 하위 기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 일관성이 저하된다. 회의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석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 자격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와 유사하게 정비한다.

4) 대의원 직위 상실 취득에 대한 보고 관련 조항 보완

대의원 변동 경위를 신속·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임기 중 대의원 직위 상실 또는 보궐로 인한 직위 취득 시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고 범위가 모호하므로, 해당 직위가 속한 캠퍼스회의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하여 규정의 확실성을 높인다.

5) 회의록의 공개 기한 수정 및 관련 규정 추가

2024년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는 대의기구(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를 명문화하여 회의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다만 회칙상 공개 기한이 촉박하여 회의록 작성·검토의 충실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의기구 회의록 공개 기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하여, 내용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의기구 중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관한 명시 규정이 부재하므로, 동 규정을 신설하여 회칙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규정 수정

1)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보완

현행 회칙은 총학생회장단이 부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제98조 제2항은 양 캠퍼스회의의 비상대책위원장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를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출범 시 구성 방식과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양 캠퍼스회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구성 요건의 명확성과 집행가능성을 제고한다.

3.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

제출일: 2025년 11월 3일

제1장 총칙.....	8
제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8
제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9
제2장 전체학생총회.....	11
제1절 연석전체학생총회	11
제2절 전체학생총회	12
제3장 학생총투표.....	14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6
제1절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16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18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21
제1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21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23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	25
제6장 총학생회장단.....	27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30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32
제9장 단위기구.....	33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33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34
제10장 특별기구.....	36
제11장 재정.....	38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40
제13장 회칙·세칙·규칙.....	41
제1절 통칙	41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41
제3절 세칙·규칙	42
부칙.....	44

제1장 총칙

제1절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제1조 (명칭)

본 회는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교수, 교직원, 동문과 더불어 대학의 4주체로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회 자치활동과 건학이념인 수(修), 기(己), 치(治), 인(人), 교시인 인(仁), 의(義), 예(禮), 지(知)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학문탐구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본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로 나뉘어 있는 이원화 캠퍼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의 결정과 공동의 사업을 펼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회원)

- ① 입학·편입학 등의 사유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된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소속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제5조 (정회원과 준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정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 재학생 전원으로 한다.
- ③ 준회원은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 휴학생 및 수료생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자체를 부인하는 행위나 본회 및 기타 정당한 학생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칙에 의한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④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 본회의 운영 및 집행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본회의 정회원은 학문 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및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⑥ 본회의 정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가진다.
- ⑦ 본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받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산하 의결기구 발의권
 3. 본회 산하 의결기구 의결권
 4. 학생회비 납부의 의무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대표자가 휴학 또는 수료 상태에 있는 경우 전항 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 제반사항의 의무와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받는다.

제7조 (본회의 구성)

본회는 목적 달성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 캠퍼스 총학생회, 연석전체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을 둔다.

제8조 (학교 운영 참여)

본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해 학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중요사항
2. 학생권익과 밀접한 사항
3. 본교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진행
4.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2절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

제9조 (명칭)

- ① 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캠퍼스회”)라 한다.
- ② 양 캠퍼스의 캠퍼스회를 각각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라 한다.

제10조 (목적)

캠퍼스회는 캠퍼스 내 독자적인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학생사회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설치)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는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각각 둔다.

제12조 (지위 및 의무)

- ① 캠퍼스회는 각 캠퍼스를 대표하는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 ② 캠퍼스회는 본회를 구성하는 조직으로서, 본회를 따를 의무를 가진다.

제13조 (회원)

캠퍼스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 중 소속 캠퍼스 회원으로 한다.

제14조 (정회원과 준회원)

캠퍼스회 회원의 정회원과 준회원 구분은 본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캠퍼스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 (캠퍼스회의 구성)

캠퍼스회는 캠퍼스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장 전체학생총회

제1절 연석전체학생총회

제17조 (지위)

연석전체학생총회(이하 “연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8조 (구성)

연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9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총회를 주재한다.
- ② 연석총회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 ①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의 연서
 2.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연석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1조 (업무 및 권한)

연석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총회에서 상정한 안건
2.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5. 기타 본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22조 (개회)

- ① 연석총회는 각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연석총회는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제의 하에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직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 ① 연석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연석총회의 안건을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21조제4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전체학생총회

제25조 (지위)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는 캠퍼스회의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총회는 캠퍼스회의의 정회원 전원 및 준회원 중 직선제로 선출된 학생대표자로 구성한다.

제27조 (의장)

- ① 의장은 총회의 운영 진반을 관장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 ② 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28조 (소집)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재직의원 1/3 이상의 연서
 2. 중앙운영위원회 재직위원 2/3 이상의 연서
 3.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총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29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3.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
4.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탄핵안
5. 연석총회 소집 요구
6. 기타 캠퍼스회 회원이 발의한 안건

제30조 (개회)

- ① 총회는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총회는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제의하에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 (의결)

-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은 기명투표와 무기명투표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결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2조 (안건 위입)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총회의 안건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위입할 수 있다. 단, 제29조제4호의 안건은 위입할 수 없다.

제3장 학생총투표

제33조 (지위)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연석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4조 (투표권)

학생총투표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 모두에게 부여한다.

제35조 (시행 및 공고)

- ① 학생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1. 각 캠퍼스회 총회 출석회원 1/3 이상의 연서
 2.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②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투표 발의 즉시 학생총투표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학생총투표는 발의 공고로부터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로부터 5일 후에 시행할 수 있다.
- ④ 투표 실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투표를 온라인으로 시행할 경우 제5호는 명시하지 아니한다.
 1. 안건
 2. 안건에 대한 설명
 3. 본조 제1항에 의한 시행 근거
 4. 시행 일시
 5. 투표소 설치 장소

제36조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

- ①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이하 “총투관위”)는 투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총투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중앙운영위원 중 최소 4인
 3.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확대운영위원 중 최소 1인
- ③ 학생총투표관리위원장은 학생총투표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총투관위는 투표일 20일 이전에 구성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 경우 발의 후 즉시 구성할 수 있다.
- ⑤ 총투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총투관위는 투표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⑦ 총투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된 투표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

력을 모집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

- ① 학생총투표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의 원칙에 의한다.
- ② 학생총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총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제상정하지 못한다.

제38조 (준용)

기타 학생총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39조 (캠퍼스회 개별 시행)

- ① 학생총투표는 안건에 따라 해당 캠퍼스회 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캠퍼스회 개별 시행 시에는 해당 캠퍼스회 내에서만 운영되는 총투관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시행에 대한 제반 사항은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 ② 캠퍼스회 내에서 개별 시행한 학생총투표를 통한 의결은 해당 캠퍼스회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절 연석학생대표자회의

제40조 (지위)

연석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연석전학대회”)는 연석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본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

제4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석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총학생회장단
 2. 본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본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본회 학과 및 전공 반장 또는 1~2학년대표 · 3~4학년대표
 5.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6. 본회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 ③ 본조 제1항제4호, 제6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 ④ 본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선출되거나 소속 단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42조 (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해당 캠퍼스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대의원의 출결)

- ① 대의원이 연석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연석전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의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전학대회를 주재한다. 연석전학대회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②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 (소집)

- ① 연석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연석전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2.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 3.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② 연석전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일시
 - 2. 회의 장소
 - 3. 안건
 -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45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연석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석전학대회의 의결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6조 (업무 및 권한)

- ① 연석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 2.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 3.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
 - 4.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
 - 5. 연석총회 소집 요구
 - 6. 기타 연석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 ② 연석전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개회)

- ① 연석전학대회는 각 캠퍼스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연석전학대회는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8조 (의결)

연석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재량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연석전학대회의 안건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46조 제1항제4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50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총회의 위임기구이며, 동시에 캠퍼스회의 최고 대의기구로서 심의, 의결 및 감사를 진행한다.

제5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반장 또는 1~2학년대표 · 3~4학년대표
 5.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6.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
- ② 본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 ③ 본조 제1항제4호, 제6호의 각 단위별 대의원은 최대 한 명으로 제한한다.
- ④ 본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선출되거나 소속 단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52조 (대의원의 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대의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해당 캠퍼스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대의원의 출결)

- ①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하는 단위 내 1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이미 대의원인 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으며, 확대운영위원은 위임할 수 없다.

- ② 대의원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을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 2. 결석 사유
 -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③ 위임장과 결석계는 전학대회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대의원이 위임장이나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의장)

- ① 의장은 전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전학대회를 주재한다.
- ②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제55조 (소집)

-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전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④ 전학대회는 10일 이전에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⑤ 소집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회의 시작 일시
 - 2. 회의 장소
 - 3. 안건
 -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고 사항

제55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전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학대회의 의결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업무 및 권한)

① 전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2. 학생회비 배분안
3.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
4.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인준 및 해임
5. 총회 안건의 상정
6. 연석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7.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탄핵안 발의
8. 학생회비 인상·인하
9. 총회 소집 요구
10. 연석전학대회 소집 요구
11. 기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12. 기타 전학대회 대의원이 발의한 안건

② 전학대회는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 (개회)

- ① 전학대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전학대회는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8조 (의결)

전학대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9조 (안건 위임)

정족수 미달로 개회 혹은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의장이 제량에 따라 7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할 경우 전학대회의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단, 제56조제1항제7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절 연석중앙운영위원회

제60조 (지위)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61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위원”)이 된다.
 1. 총학생회장단
 2. 본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 본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 본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연석중운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62조 (위원의 의무)

- ① 연석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연석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연석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해당 캠퍼스회의 중앙운영위원회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위원의 출결)

- ① 연석중운위원이 연석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연석중운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을 가진 연석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4조 (의장단)

- ① 의장단은 연석중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연석중운을 주재한다.
- ② 연석중운의 의장단은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

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의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이 된다.

- ③ 의장단은 각 캠퍼스회 1인씩 2인이 공동으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 (소집)

- ① 연석중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총학생회상단 임기 시작일로부터 반기에 한 번씩, 의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연석중운 의장단의 요구
 - 2.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65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연석중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석중운의 의결하여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6조 (업무 및 권한)

연석중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본회 제반 사업
- 2.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 및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상정
- 3.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 4. 연석총회 안건의 상정
- 5. 연석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 6. 본회의 동의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
- 7. 총학생회칙 유권해석
- 8. 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9. 연석전학대회 소집 요구
- 10. 연석전학대회 소집 요구

제67조 (개회)

- ① 연석중운은 각 캠퍼스회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 ② 연석중운은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68조 (의결)

연석중운은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석중운의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

제69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는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70조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운영위원(이하 “중운위원”)이 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독립단위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
- ② 단위의 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나 선출직이 아니므로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③ 중운의 요구에 의해 중앙집행위원회 국장이 회의에 출석하여 사업 보고 및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 ④ 필요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71조 (위원의 의무)

- ① 중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중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중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결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해당 캠퍼스회의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위원의 출결)

- ① 중운위원이 중운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중운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의결권을 가진 중운 단위가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 (의장)

- ① 의장은 중운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중운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이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모두가 결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운위원 중 호선된 1인이 임시 의장

이 된다.

제74조 (소집)

- ① 중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중운 의장의 요구
 2. 중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제74조의2 (회의의 공개)

- ① 중운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리지 않고 공개회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의 종료 이후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1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본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운의 의결하에 회의록 공개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그 때에도 30일 이내에 온라인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5조 (업무 및 권한)

중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분회 및 캠퍼스회 제반 사업
2. 총회 안건의 상정
3. 학생회비 배분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
4. 중앙집행위원회 예·결산안의 심의 후 전학대회 상정
5.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 설치
6. 기타 전학대회 안건의 상정
7. 연석중운 안건의 상정
8. 중앙집행위원회 사업 진행에 대한 조정
9.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10. 총회 소집 요구
11. 전학대회 소집 요구
12. 연석중운 소집 요구

제76조 (개회)

중운은 재적 단위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각각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

제77조 (의결)

중운은 출석 단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중운 의결권은 각 단위 당 1표를 인정한다.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

제78조 (확대회의)

중운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확대회의(이하 “확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9조 (구성)

- ① 확대회의의 구성원을 “확대운영위원”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대운영위원(이하 “확운위원”)이 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2. 캠퍼스회 단과대학 및 학부 학생회장단
 3. 캠퍼스회 학과 및 전공 학생회장단
 4. 캠퍼스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
- ③ 각 단위의 확운위원은 최대 두 명으로 제한한다.

제80조 (위원의 의무)

- ① 확운위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자신이 소속된 단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단위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확운위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확운위원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 (위원의 출결)

- ① 확운위원이 확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에게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성자의 소속, 직위, 이름, 학번
 2. 결석 사유
 3. 결석계 제출 일시 및 서명
- ② 결석계는 확대회의의 개최 하루 전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장의 판단하에 해당 시간 이후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확운위원이 결석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석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통하여 무단 결석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2조 (의장)

- ① 의장은 확대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확대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은 중운 의장이 맡는다.

제83조 (소집)

- ① 확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확대회의 제적위원 1/3 이상의 요구

2. 중운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 ② 소집일은 요구 직후 예정된 중운 정기회의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4조 (업무 및 권한)

- ① 제59조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진학대회의 안건을 진학대회와 동일한 절차로 심의·의결한다.
- ② 제136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승인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을 결정한다.
- ③ 그 밖의 업무 및 권한은 중운과 동일하다.

제85조 (개회)

- ① 확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확대회의는 국가적 재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진행이 제한될 경우, 의장의 판단 하에 온라인 등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6조 (의결)

확대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총학생회장단

제87조 (지위 및 구성)

- ① 총학생회장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연석총회, 총회, 연석전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운 등의 의장이 된다.
- ③ 각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소속 캠퍼스회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의무)

- ①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연석총회, 총회, 연석전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직을 준수하며, 임기 초 중운 및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이 숙지해야 할 총학생회칙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업무 및 권한)

- ① 연석총회, 총회, 연석전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운을 소집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결산안, 사업 계획 등을 중운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필유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은 소속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집행국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총학생회장단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에게 제89조2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 ①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로 전환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및 선거운동본부를 그 즉시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차기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경우, 인수위원을 두지 않는다.

-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 1.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인계
 - 2. 총학생회 집행기구의 조직·기능 및 예·결산 현황의 파악
 - 3. 기타 총학생회 집행기구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④ 총학생회 인수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본조 제3항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해산한다.

제90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 1. 차기 선거로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 2.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 ③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1조 (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 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 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4. 캠퍼스회 부총학생회장
- ③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 ④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91조의2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1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연석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2. 연석전학대회 재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연석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연석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연석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1. 연석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2. 탄핵안 통과 후 연석전학대회 재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 3.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전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전학대회 재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캠퍼스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캠퍼스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9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즉시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93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총학생회장단이 권위·탄핵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중강일로부터 140일 이내 일 경우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운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해야 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4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증원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중운 단위 선거가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차기 연도 증원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각 회의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2.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한 경우,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과정 (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5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중운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제96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중운 단위 집행위원 중 1인 이상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7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선출된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8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학대회, 중운을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양 캠퍼스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총회, 연석전학대회, 연석중운을 소집하고, 각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된다.

제99조 (준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제100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캠퍼스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01조 (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집행국은 국장, 차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제102조 (중앙집행위원장)

-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국장 중 1인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집행위원)

- ①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104조 (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업무의 집행
2. 의결기구에 사업 보고, 운영 계획, 예·결산안의 제출
3. 본회 및 캠퍼스회의 집행 전반

제105조 (공동 운영)

각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양 캠퍼스회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는 총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른다.

제9장 단위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제106조 (지위)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6조의2 (독립단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단위의 지위를 인정한다.
 1.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 또는 학과
 2. 소속 단과대학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학부 또는 학과
- ②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캠퍼스회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 (회원)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8조 (조직)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대표자회의 및 단과대학·독립단위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9조 (학생회장단)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석전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연석중운위원, 중운위원, 확운위원이 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재정)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본조 제1항에 의해 배분받은 학생회비를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1조 (독립성의 보장)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 (준용)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113조 (지위)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14조 (회원)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5조 (조직)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를 들은 원칙으로 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부·학과·전공 학생총회 및 학부·학과·전공 운영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6조 (학생회장단)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연석전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확운위원이 된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재정)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가 배분받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8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단위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준용)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 또는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10장 특별기구

제120조 (특별기구의 성립 요건)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캠퍼스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캠퍼스회 회원 중 특정 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
2. 캠퍼스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3. 캠퍼스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 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4. 캠퍼스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5. 캠퍼스회의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 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121조 (분류, 구성, 위상)

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폭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독립기구, 부속기구, 임시기구, 계열기구로 구분한다.

1.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5호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현재의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한다.
2.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킨다.
3.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제120조제4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총투관위,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를 포함한다.
4.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되 각 학과나 기층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의 연합 등을 가리킨다.

제122조 (절차)

- ①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임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75조제4호를 따른다.
- ②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운에 제출하고, 중운의 심의를 거쳐 정기 전 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집행위원회 구성원 명부
 3. 소개서
 4. 전년도 활동보고서
 5. 사업계획서
 6. 서약서

- ③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 ⑤ 특별기구 간 전환을 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따른다. 단, 독립기구 또는 계열기구에서 부속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또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⑥ 캠퍼스회 산하의 특별기구는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캠퍼스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3조 (재정)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운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
- ③ 특별기구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구 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24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에서 인준한다.
- ③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및 부속기구 회장 혹은 부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 (특별기구장단의 지위)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은 중운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은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그 밖의 특별기구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126조 (특별기구의 해체)

특별기구 해체 시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단,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그 역할이 다하면 자동으로 해소된다.

제127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기구 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정

제128조 (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30조 (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
-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증운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 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자치회비”라 한다.

제131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한다. 단, 진행 중인 사업의 제정이 복수의 기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초반기: 임기 시작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중반기: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 종반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2조 (예산)

- ① 예산은 매 학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증운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전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결산)

-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증운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반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거부권)

- 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 예산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운은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전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예산관리 및 인출)

- ① 학생회비의 정수는 학교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모든 인출 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
- ③ 학생회비의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제136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불투명한 재정 운용 감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의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중운은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운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1. 중운위원 중 2인
 - 2. 중운위원 아닌 확운위원 중 2인
 - 3. 각 단위의 집행위원을 제외한 회원 2명
-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이 된 단위에 대해 예·결산자료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 대표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학대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 활동 결과를 발족 후 2주 이내에 학우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은 학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138조 (선거 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139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석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40조 (입후보자)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각 캠퍼스회 회원 2인으로 하여 4인 1조로 입후보해야 한다.

제14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운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중운위원 중 최소 4인
 3. 중운위원이 아닌 확운위원 중 최소 1인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중선관위는 투표일 50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⑤ 중선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중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2조 (당선)

선거인 재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43조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 또는 탄핵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중선관위를 구성한다. 단,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중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연석중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4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3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통칙

제145조 (정의)

- ① 총학생회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있다.
1. 총학생회칙
 2. 세칙
 3. 규칙
- ②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에 있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세칙은 총학생회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총학생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총학생회칙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④ 규칙은 상위 규정이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위 규정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6조 (규정의 위계)

- ① 총학생회칙은 세칙에 우선하고 세칙은 규칙에 우선한다.
- ② 상위 규정에 충돌하는 하위 규정의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2. 세칙·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
- ② 회개소위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증원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증원위원 중 최소 4인
 2. 증원위원이 아닌 확원위원 중 최소 1인
- ③ 회칙개정소위원장은 회개소위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회개소위 설치의 경우, 회개소위를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연석회개소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제148조 (개정안 발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각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진학대회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
3. 각 캠퍼스회 중운 재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연석회개소위 전원의 연서

제149조 (개정안 공고)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그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②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150조 (개정안 의결)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연석중운의 심의를 거쳐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한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 (개정안 정리)

- ① 연석중운은 총학생회칙 개정 의결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연석회개소위의 발의에 의한 개정일 경우 연석회개소위가 연석중운 대신 개정안을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 (공포)

- ①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개정안 가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②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4. 시행일
 - 5. 상시 열람 방법
- ③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3절 세칙·규칙

제153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 ② 세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1.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 2. 각 캠퍼스회 중운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3. 연석회개소위 과반수의 요구

-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4조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규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연석중운 또는 연석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해당 캠퍼스회 중운 또는 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 ③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5조 (선거 관련 규정의 예외)

- 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선거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 ② 연석중선관위 구성 이전에 선거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경우, 제153조 또는 제154조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연석중운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개정 전 총학생회칙 체제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회칙 공포 시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 회계, 대표자 선출 등의 체제는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 범위의 해석)

캠퍼스회에 관한 모든 조항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의 제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의결 사항

찬성	반대
상기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인준한다.	상기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제6장 총학생회장단

제87조 (지위 및 구성)

- ① 총학생회장단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자연과학캠퍼스 부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연석총회, 총회, 연석전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운 등의 의장이 된다.
- ③ 각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은 소속 캠퍼스회의 대표로서 지위와 책임을 가진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단, 총학생회장단이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성균관대학교 학부 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 (의무)

- ① 총학생회장단은 성균관대학교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 실현함과 아울러 대학의 자치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 실행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대표로서 본회의 제반사항에 대해 연석총회, 총회, 연석전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총학생회장단은 총학생회직을 준수하며, 임기 초 중운 및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이 숙지해야 할 총학생회칙 조항과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업무 및 권한)

- ① 연석총회, 총회, 연석전학대회, 전학대회, 연석중운, 중운을 소집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회의 국장, 차장, 국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편성한 예·결산안, 사업 계획 등을 중운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⑤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결위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총학생회장단은 소속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 산하 집행국의 지도, 조절, 통제 등의 일상 업무를 관장한다.
- ⑦ 총학생회장단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인에게 제89조2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총학생회 인수위원회)

- ①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단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로 전환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은 당선 공고일 이후 총학생회장단 당선인 및 선거운동본부를 그 즉시 총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차기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경우, 인수위원을 두지 않는다.

- ③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인수인계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 1. 중앙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인계
 - 2. 총학생회 집행기구의 조직·기능 및 예·결산 현황의 파악
 - 3. 기타 총학생회 집행기구 업무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④ 총학생회 인수위원장은 전임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총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본조 제3항의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해산한다.

제90조 (임기)

-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당선 확정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 ②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된다.
 - 1. 차기 선거로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되었을 때
 - 2. 제93조제1항제1호에 의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 ③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의 임기는 보궐선거 당선 확정 공표일로부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1조 (탄핵)

- ① 총학생회장단이 직무 집행에 관련하여 회칙 위반 혹은 범법 행위, 학칙 위반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행한 경우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1. 총학생회장단
 - 2.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 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4. 캠퍼스회 부총학생회장
- ③ 탄핵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탄핵안 또는 탄핵투표가 부결될 경우, 부결된 탄핵안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탄핵안은 당해 학기에 안건으로 재상정하지 못한다.
- ④ 탄핵 투표에 의한 기타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91조의2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1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연석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1. 본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 2. 연석전학대회 재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총학생회장단은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연석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 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연석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연석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 1. 연석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2. 탄핵안 통과 후 연석전학대회 재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 3.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본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3 (캠퍼스회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 ① 제91조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한 탄핵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전학대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 발의 시, 그 대상자는 탄핵안의 발의 직후부터 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탄핵투표가 부결되기 전까지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된다.
- ③ 전학대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뒤,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단,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을 시 탄핵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총회의 개최를 통한 탄핵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2. 탄핵안 통과 후 전학대회 재적의원 중에서 탄핵투표관리위원회 구성
 3. 캠퍼스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투표 실시
- ④ 탄핵 투표는 캠퍼스회 정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투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가 무산될 시 탄핵 투표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비상대책위원회

제92조 (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 즉시 캠퍼스회의 상설 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를 대체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

제93조 (구성)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성한다. 단, 제1호의 경우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후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2. 총학생회장단이 권위·탄핵된 시점에서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중강일로부터 140일 이내 일 경우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운 전원으로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에 의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이 완료되어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해야 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4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제93조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증원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중운 단위 선거가 모두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차기 연도 증원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사유
 2.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원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절차 및 일정
- ④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한다. 각 회의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 중 4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한다.
 2. 2차 회의에서 간선투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며, 최다득표자가 위원장이 된다.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한 경우, 차득표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고하고 24시간 이후에 해소한다.
 1.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과정 (후보자 정보·투표방식·투표결과)
 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선출 결과 (선출자 정보)
 3.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 해소 공지

제95조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운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중운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차기 총학생회장단의 안정적 선출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제96조 (임시중앙집행위원회)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의 결위 기간 동안 중앙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임시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중운 단위 집행위원 중 1인 이상을 추천하여 구성하며,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기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97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립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부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보좌한다. 선출된 부비상대책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98조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전학대회, 중운을 소집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중앙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양 캠퍼스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석총회, 연석전학대회, 연석중운을 소집하고, 각 회의의 공동 의장이 된다.

제99조 (준용)

기타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중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8장 중앙집행위원회

제100조 (지위)

중앙집행위원회는 캠퍼스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01조 (구성)

-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집행국을 설치할 수 있다. 각 집행국은 국장, 차장, 국원으로 구성한다.

제102조 (중앙집행위원장)

- ① 중앙집행위원장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를 관장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③ 중앙집행위원장은 국장 중 1인으로 한다.

제103조 (중앙집행위원)

- ① 중앙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과 중앙집행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집행한다.
- ②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차장, 국원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단, 국장, 차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104조 (업무 및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업무의 집행
2. 의결기구에 사업 보고, 운영 계획, 예·결산안의 제출
3. 본회 및 캠퍼스회의 집행 전반

제105조 (공동 운영)

각 캠퍼스회 중앙집행위원회는 본회 전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집행을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양 캠퍼스회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는 총학생회장단의 판단에 따른다.

제9장 단위기구

제1절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제106조 (지위)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06조의2 (독립단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단위의 지위를 인정한다.
 1. 특정 단과대학에 속하지 않은 학부 또는 학과
 2. 소속 단과대학이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학부 또는 학과
- ② 전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캠퍼스회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7조 (회원)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08조 (조직)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대표자회의 및 단과대학·독립단위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9조 (학생회장단)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각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은 연석전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연석중운위원, 중운위원, 확운위원이 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0조 (재정)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

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본조 제1항에 의해 배분받은 학생회비를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에 배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③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④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의 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1조 (독립성의 보장)

- ①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2조 (준용)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2절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제113조 (지위)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의 최고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14조 (회원)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회원의 자격·유형·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총학생회칙의 회원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15조 (조직)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의결기구로 학생총회, 운영위원회를 둘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집행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집행위원회는 학부·학과·전공 학생총회 및 학부·학과·전공 운영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가진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대표자로 학생회장단을 둔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 조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6조 (학생회장단)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각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소속 회원 전체의 투표로 선출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은 연석전학대회 대의원, 전학대회 대의원, 확운위원이 된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단의 선출, 업무와 권한, 의무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④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재정)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3항에 의해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가 배분받은 본회의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상호간 정한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제123조제5항에 의해 자치회비를 납부받을 수 있다.
- ③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의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18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학부·학과·전공 학생회는 총학생회칙과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을 개정할 경우, 단위운영위원회를 통해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준용)

학부·학과·전공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칙 또는 소속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칙을 준용한다.

제10장 특별기구

제120조 (특별기구의 성립 요건)

회원들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서 캠퍼스회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캠퍼스회 회원 중 특정 위치에 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수렴, 발현할 필요가 있을 때
2. 캠퍼스회 회원 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3. 캠퍼스회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 마련과 수익금의 사용이 학생회비의 내역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4. 캠퍼스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5. 캠퍼스회의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원회 집행국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 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121조 (분류, 구성, 위상)

특별기구는 각 기구 구성원의 폭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독립기구, 부속기구, 임시기구, 계열기구로 구분한다.

1.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5호와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것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현재의 동아리연합회를 포함한다.
2.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가리킨다.
3.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제120조제4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특별기구를 가리키며, 총투관위, 감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를 포함한다.
4.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는 제120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하되 각 학과나 기층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의 연합 등을 가리킨다.

제122조 (절차)

- ①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임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75조제4호를 따른다.
- ②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운에 제출하고, 중운의 심의를 거쳐 정기 전 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1.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집행위원회 구성원 명부
 3. 소개서
 4. 전년도 활동보고서
 5. 사업계획서
 6. 서약서

- ③ 특별기구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 ⑤ 특별기구 간 전환을 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따른다. 단, 독립기구 또는 계열기구에서 부속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 또는 정기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인준을 받을 수 있다.
- ⑥ 캠퍼스회 산하의 특별기구는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캠퍼스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3조 (재정)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만이 본회의 학생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배분받는다.
- ② 그 밖의 특별기구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첨부하여 중운에 재정을 신청하고 전학대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회비 배분안에 의거하여 학생회비를 배분받을 수 있다.
- ③ 특별기구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기구 회칙으로 정하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학생회비 운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제124조 (특별기구장단의 선출)

- ① 특별기구장단은 각 특별기구의 회칙에 의거하여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기구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립기구장단을 제외하고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에서 선출한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②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장단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에서 인준한다.
- ③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및 부속기구 회장 혹은 부회장이 사퇴와 탄핵 등의 이유로 직위를 상실하거나,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직위를 획득한 경우, 중운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 (특별기구장단의 지위)

- ①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장단은 중운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②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장단은 전학대회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그 밖의 특별기구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장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126조 (특별기구의 해체)

특별기구 해체 시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단,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는 그 역할이 다하면 자동으로 해소된다.

제127조 (독립성의 보장)

- ① 특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기구 회칙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자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 회칙을 개정할 경우, 중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재정

제128조 (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30조 (학생회비)

- ① 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② 학생회비의 예·결산, 심의 및 조정,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각 캠퍼스회 내에서 소속 캠퍼스회 회원이 납부한 학생회비로만 이루어진다.
- ③ 학생회비는 캠퍼스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 중 독립기구에 배분되며, 학생회비 배분안은 증운에서 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④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대회에서 학생회비의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 ⑤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소속 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자치회비”라 한다.

제131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 ② 본회의 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한다. 단, 집행 중인 사업의 제정이 복수의 기간에 걸쳐 집행될 경우, 회계담당자의 판단하에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초반기: 임기 시작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2. 중반기: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3. 종반기: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제132조 (예산)

- ① 예산은 매 학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편성하여 증운의 심의를 거쳐 전학대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 ② 확정된 예산안은 전학대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3조 (결산)

- ① 매 학기마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산을 하여 증운에서 심의 및 조정하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최종 결산은 전학대회 의결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산서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 ④ 중앙집행위원회는 종반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결산을 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임기 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4조 (거부권)

- ① 전학대회에서 의결한 예산서에 이의가 있을 시 예산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중운은 재심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예·결산안을 검토, 수정하여 전학대회에 제출한다.
- ③ 전학대회에서 이를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 (예산관리 및 인출)

- ① 학생회비의 정수는 학교당국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모든 인출 사항은 각 단위 대표자가 관리한다.
- ③ 학생회비의 인출 거부 및 삭감, 동결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학대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불가하다.

제136조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불투명한 재정 운용 감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총학생회, 단과대학·독립단위 학생회, 특별기구의 예·결산안 내역에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면, 중운은 일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발족시킨다.
-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운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1. 중운위원 중 2인
 - 2. 중운위원 아닌 확운위원 중 2인
 - 3. 각 단위의 집행위원을 제외한 회원 2명
- ④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이 된 단위에 대해 예·결산자료와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위 대표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학대회의의 승인을 받은 감사 활동 결과를 발족 후 2주 이내에 학우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감사 결과에 대한 문책은 학대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운용세칙」을 따른다.

제12장 총학생회장단 선거

제138조 (선거 원칙)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의 원칙에 의한다.

제139조 (선거 시기)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매년 11월 중에 실시한다. 부득이한 경우 세부 일정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석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40조 (입후보자)

- ① 총학생회장단 선거 입후보자는 본회 정회원으로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②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각 캠퍼스회 회원 2인으로 하여 4인 1조로 입후보해야 한다.

제14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 ② 중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운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캠퍼스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2. 중운위원 중 최소 4인
 3. 중운위원이 아닌 확운위원 중 최소 1인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중선관위는 투표일 50일 이전에 구성한다.
- ⑤ 중선관위는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중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⑥ 중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42조 (당선)

선거인 제적수의 과반수 투표의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로 한다.

제143조 (보궐선거)

- ① 총학생회장단 모두가 궐위 또는 탄핵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위한 중선관위를 구성한다. 단, 잔여임기가 당해 2학기 중강일로부터 140일 이내일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에 관한 조항에 준한다.
- ②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연석중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44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13장 회칙·세칙·규칙

제1절 통칙

제145조 (정의)

- ① 총학생회의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있다.
1. 총학생회칙
 2. 세칙
 3. 규칙
- ② 총학생회칙은 총학생회에 있어 최고법의 지위를 가진다.
- ③ 세칙은 총학생회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총학생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총학생회칙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세칙을 정할 수 있다.
- ④ 규칙은 상위 규정이 위임한 사항이나 상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상위 규정에 부수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46조 (규정의 위계)

- ① 총학생회칙은 세칙에 우선하고 세칙은 규칙에 우선한다.
- ② 상위 규정에 충돌하는 하위 규정의 조항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47조 (회칙개정소위원회)

- ①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회개소위”)는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이다.
1.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2. 세칙·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 발의
- ② 회개소위는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중운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1. 중운위원 중 최소 4인
 2. 중운위원이 아닌 확운위원 중 최소 1인
- ③ 회칙개정소위원장은 회개소위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④ 총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회개소위 설치의 경우, 회개소위를 반드시 양 캠퍼스회에 각각 설치하여 연석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연석회개소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절 총학생회칙 개정

제148조 (개정안 발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1. 각 캠퍼스회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
2. 각 캠퍼스회 진학대회 재적의원 1/10 이상의 연서
3. 각 캠퍼스회 중운 재직위원 2/3 이상의 연서
4. 연석회개소위 전원의 연서

제149조 (개정안 공고)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그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②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150조 (개정안 의결)

- ①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연석중운의 심의를 거쳐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의결한다.
- ②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한 캠퍼스회 전학대회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개정안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1조 (개정안 정리)

- ① 연석중운은 총학생회칙 개정 의결 후 저촉되는 조항·자구·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② 연석회개소위의 발의에 의한 개정일 경우 연석회개소위가 연석중운 대신 개정안을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 (공포)

- ① 양 캠퍼스회 총학생회장은 개정된 총학생회칙을 개정안 가결일로부터 6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 ②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발의자 명단
 - 4. 시행일
 - 5. 상시 열람 방법
- ③ 전부개정안일 경우 전항 제2호 대신 신조문과 구조문 전부를 게시한다.

제3절 세칙·규칙

제153조 (세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세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한다.
- ② 세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1. 각 캠퍼스회 전학대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 2. 각 캠퍼스회 중운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3. 연석회개소위 과반수의 요구

- ③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4조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 ① 규칙은 양 캠퍼스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연석중운 또는 연석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은 해당 캠퍼스회 중운 또는 회개소위의 요구에 의해 발의된다.
- ③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운에서 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운에서 의결한다.
- ④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즉시 공포한다.

제155조 (선거 관련 규정의 예외)

- ①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연석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단, 한 캠퍼스회에만 적용되는 선거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해당 캠퍼스회 중선관위에서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 ② 연석중선관위 구성 이전에 선거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경우, 제153조 또는 제154조에 의거하여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권해석)

이 회칙의 유권해석은 연석중운에 있다.

제3조 (관례의 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4조 (개정 전 총학생회칙 체제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회칙 공포 시 총학생회의 모든 사업, 회계, 대표자 선출 등의 체제는 개정 회칙에 의하여 선출·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적용 범위의 해석)

캠퍼스회에 관한 모든 조항은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또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의 제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 변경을 위한 회칙개정은 그 회칙개정 가결 당시의 총학생회장단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의결 사항

찬성	반대
상기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인준한다.	상기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인준하지 않는다.

7. 논의 안건

없음.

8. 기타 안건 및 건의사항

없음.